

2007. 3. 22

제 51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철폐*

곽숙희

본원 동향분석센터
연구위원

제 5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철폐> 라는 주제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철폐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입안 및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이 논의되었다. 많은 국가들은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은 불평등하게 차별을 받고 있으며 열악한 지위를 누리고 있고, 특히 여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여아의 차별과 철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여아의 권리: 여성권? 아동권?

이번 회의는 여아가 주제인 만큼 태아의 성별감별에 따른 여아살해, 전통과 관습에 따른 여성의 성기 절단, 아동의 성매매와 착취, 조혼, 이주민, 난민, 장애여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여아의 교육 기회 박탈, 여성의 빈곤화, 여성의 노동시장으로의 기회 박탈 및 경력단절, 갈등과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착취, 소녀병사의 문제, HIV/AIDS에의 여성의 노출 위험 등 특히 여아 차별과 폭력과 관련해서, 생식보건, 건강, 교육, 노동 등 여아의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이 폭 넓게 거론되었다.

동 회의는 여성을 주제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가장 큰 규모의 유엔 회의인 까닭에 각국의 정부 대표단을 중심으로 주요의제를 논의하는 공식회의와 동시에, 여성 NGO를 중심으로 한 국제시민사회의 여성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졌다.

여아가 의제이기 때문에 특기할만한 것은, 각국에서 온 여성정책 최고 의사결정자들 틈 사이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권과 여성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하는 매우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다. 즉 여아의 권리 보호와 확대는 성인으로서 여성의 권리 확대에 보다 중점을 두느냐, 혹은 아동으로서 권리에 보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 여성을 위한

* 이 글은 제 51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의제와 본인이 한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2007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직접 참석한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법과 아동을 위한 법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커다란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8세 미만 여아에 대한 조기결혼금지는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한 여아의 매매, 교육 기회 박탈, 노동시장에의 진입 차단 등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국가 차원에서 자발적인 의지로 혼인하는 여아 혹은 불가피하게 결혼과 육아를 감당하게 된 여아의 권리를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지위위원회에 공식 토론자로 초대된 한 청소년 단체의 대표와 일부 정부 대표단들은 과연 성, 연애, 결혼이 성인 여성만의 전유물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기결혼을 금지함으로써 성인 여성의 권익은 보호할 수 있으나, 이미 혼인하여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아들은 합법적인 지위를 영위하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나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외면당하고,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른 바 인권의 사각지대로 떠밀려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성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제가 아동으로서 여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아동의 권리 역시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여성과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지위를 함축하고 있는 여아라는 의제를 다룬 본 회의는 여성권과 아동권에 어떻게 접근하며, 여아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아동으로서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여아에 대한 차별과 폭력, 각 국가의 이해와 정책의 편차

여아가 과연 여성인가 아동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는 여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바라보는 국가의 정책적 중점 방향과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조치에서 다양한 차이를 유발한다. 여성의 권리에 중점을 두는 국가가 있는 반면, 아동의 권리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도 있다. 이는 물론 각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별 정책은 여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여성권의 보호로 이해하는 국가와 아동권의 보호로 이해하는 국가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여성차별과 폭력에 대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방안들로서는 보다 여성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위기관리제도, 성폭력방지법, 성 인지적 예산제도, 정부 부서 간 여성정책 통합조정팀을 통한 종합적인 여성정책 입안제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조기결혼 금지법, 여성에 대한 재산상속차별조항 철폐 등이 있는가 하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임신이나 육아를 하는 여아를 퇴학시키지 않는 제도, 학교에서의 성 인지적 교육제도 도입, 여아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확대,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여아의 역량강화, 15세 이상 여아부터는 기초지역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지역의회에 관한 법, 아동보호법, 아동의 노동제한, 아동폭력 범죄자의 전과 기록 등록제 등으로 구별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아동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서 여아나 남아의 구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아동은 몰성적 개념인가, 혹은 여아를

아동으로서 이해할 것인가, 혹은 여성으로서 이해할 것인가 등의 의문이 증폭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도 향후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아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문제에 접근하는 국가 간의 편차는 또한 소위 비동맹 그룹 G77을 포함해서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저개발국, 혹은 분쟁경험국가들은 전쟁과 갈등 상황에서의 여아에 대한 성폭력과 성적 착취, 소녀병사의 성폭력 피해와 전쟁 이후 사회재통합의 문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적착취의 문제, 여성의 교육과 빈곤문제, 조기결혼의 문제, 성기절단의 문제 등에 보다 촉각을 세우는가 하면, 설령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나 흐름이 활성화 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완전히 보편화되거나 대중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서 있어 남성과 남아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여아교육과 더불어 사회의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남아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가정이나 비공식부문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여아에 대한 차별이나 학대는 가족과 친족 등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하고 학교의 교사나 가족 등 여아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여아의 HIV/AIDS 전염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계화와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의 대응

여아의 권리를 여성권으로 이해할 것이냐, 혹은 아동권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관점의 차이는 물론 개발도상국과 선진 국가들의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상황 혹은 국가정책들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더불어 이제 여아의 차별과 폭력은 브라질의 마리아 루시아 뻬토 레알이 지적하듯이, 한 국가만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예컨대 여아의 성적 착취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화와 더불어 한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한 국가에서 또 다른 국가로의 여아의 인신매매를 통한 성적 착취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어서, 보다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제재에 따른 미국비자 발급의 거부로 이란 정부대표단이 공식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 역시 국가의 의지만으로 한 국가의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란 측에서는 미국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대신 참석하였는데, 이란은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이란 유입의 증가에 따라 HIV/AID에 감염된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스라엘로부터의 폭탄세례로부터 자유로워야 여아의 기본적인 생명과 생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아의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위해서는 이웃나라와의 평화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제 한 국가의 여성의 폭력과 차별의 문

제는 그 원인에서부터 한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개별적 국가차원에서의 노력 이외에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대응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다. 물론 여아의 차별과 폭력 제로(zero)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나라의 고유한 상황에 따른 주요과제를 설정하여 실행되어야 하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참여 없이는 여아의 차별과 폭력 역시 종식될 수 없을 것이다.